

# 남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321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9. 3. 9.

제출자 : 자치행정위원장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. 2. 27. (남양주시장)

나. 회부일자 : 2009. 3. 2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165회 남양주시의회(임시회)

제1차 자치행정위원회(2009. 3. 9.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복지문화국장)

### 가. 개정이유

- 남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남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기능을 「U-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」가 대신하도록 하고, 기타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골자

- 조례의 명칭 「남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」를 「남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로 개정함.

○ 남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, 그 위원회의 기능을 「U-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」가 대신하도록 함.

○ 기타 용어 및 자구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 - 회의록 참고

4. 심사 중 논의된 사항

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수요에 비하여 조성액이 현실적이지 못하여 목표액의 상향 조정을 주문하였으며, 또한 장학생 선발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. 끝